

감리보고서

• 작성방법에 따라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 (3쪽 중 제1쪽)

신청구분	[] 감리중간보고		[] 감리완료보고	
건축공사명			허가번호/허가일자	
대지위치(지번 포함)			건축물 용도	
감리구분	[] 상주감리		[] 상주감리 이외 [] 허가권자 지정 [] 건축주 지정	
건축공사 종류	[] 다중이용건축물 [] 특수구조건축물 []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			
	[] 고층건축물 [] 기타 건축공사			
	해당되는 경우만 기재 [] 10m 이상 굴착공사 및 5m 이상 옹벽공사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9조제6항에 해당) [] 마감재료 설치공사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9조제7항에 해당)			
구조형식	[] 철근콘크리트조 [] 철골철근콘크리트조 [] 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			
	[] 철골조 [] 기타 구조			

구분	현장 확인 기간 (일자까지 기재)	건축공정 (건축물 구조별/동별 작성)	동 명칭 및 번호
공사감리 중간보고	~	[] 기초공사 철근배근 완료	
	~	[] 지붕슬래브 철근배근 완료 (철골조의 경우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)	
	~	[] (층) 바닥슬래브 철근배근 완료 (철골조의 경우 주요구조부 조립 완료)	
	~	[] 거푸집 또는 주춧돌 설치 완료	
	~	[]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중부로 전달되는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혹은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의 철근배치 완료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해당)	
공사감리 완료보고	공사감리기간	~	
	공사완료일자		

관계전문 기술자 협력	현장 확인기간 (일자까지 기재)	대상 건축공사 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91조의3)	협력 내용
	~	[] 특수구조건축물 및 고층건축물	
	~	[]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공사	
	~	[]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	
	~	[] 건축설비	
		[] 기타	

공사감리자 •관계전문 기술자 확인 및 의견	확인자				의견
	분야	소속회사	기술사 종목 또는 건설기술인 등급	성명 및 서명·날인	
	()분야			(서명 또는 인)	
	()분야			(서명 또는 인)	
	()분야			(서명 또는 인)	
	()분야			(서명 또는 인)	
	()분야			(서명 또는 인)	
	(공사감리자)			(서명 또는 인)	

「건축법」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감리보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보고인(건축주) 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구 분		조사내용	관련규정	완공 후 현황
현장 조사	대지 및 도로	대지의 안전 등	「건축법」 제40조	[] 적합 [] 부적합 [] 해당 없음
		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	「건축법」 제41조	[] 적합 [] 부적합 [] 해당 없음
		대지의 조경	「건축법」 제42조, 조례 ()% 이상	()% [] 해당 없음
		건축선의 지정	「건축법」 제46조	[] 적합 [] 부적합 [] 해당 없음
		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	「건축법」 제47조	[] 적합 [] 부적합 [] 해당 없음
	구조내력	구조내력 등	「건축법」 제48조	[] 적합 [] 부적합 [] 해당 없음
	피난시설	직통계단의 설치	「건축법」 제49조	[] 적합 [] 부적합 [] 해당 없음
		피난·특별피난·옥외피난계단의 설치	「건축법」 제49조	[] 적합 [] 부적합 [] 해당 없음
		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설치	「건축법」 제49조	[] 적합 [] 부적합 [] 해당 없음
		건축물 바깥쪽에서의 출구설치	「건축법」 제49조	[] 적합 [] 부적합 [] 해당 없음
		옥상광장 등의 설치	「건축법 시행령」 제40조	[] 적합 [] 부적합 [] 해당 없음
		방화구획 등의 설치	「건축법」 제49조	[] 적합 [] 부적합 [] 해당 없음
		계단설치기준 및 구조	「건축법」 제49조	[] 적합 [] 부적합 [] 해당 없음
		거실의 반자·채광·환기	「건축법」 제49조	[] 적합 [] 부적합 [] 해당 없음
		층간 바닥 구조	「건축법」 제49조	[] 적합 [] 부적합 [] 해당 없음
		경계 및 칸막이벽 구조	「건축법」 제49조	[] 적합 [] 부적합 [] 해당 없음
		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	「건축법 시행령」 제54조	[] 적합 [] 부적합 [] 해당 없음
	내화구조	건축물의 내화구조	「건축법」 제50조	[] 적합 [] 부적합 [] 해당 없음
		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	「건축법」 제50조	[] 적합 [] 부적합 [] 해당 없음
	건축재료	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	「건축법」 제52조	[] 적합 [] 부적합 [] 해당 없음
		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	「건축법」 제52조	[] 적합 [] 부적합 [] 해당 없음
		복합자재의 품질관리	「건축법」 제52조의3	[] 적합 [] 부적합 [] 해당 없음
	지하층	지하층 구조	「건축법」 제53조	[] 적합 [] 부적합 [] 해당 없음
	용도제한	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	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6조	[] 적합 [] 부적합 [] 해당 없음
	건폐율 용적률	건축물의 건폐율	도시·군계획조례 ()% 이하	[] 적합 [] 부적합 ()%
		건축물의 용적률	도시·군계획조례 ()% 이하	[] 적합 [] 부적합 ()%
	대지안의 공지	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	「건축법」 제58조	[] 적합 [] 부적합 [] 해당 없음
		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	「건축법」 제58조	[] 적합 [] 부적합 [] 해당 없음
	높이제한	건축물의 높이제한	「건축법」 제60조	[] 적합 [] 부적합 [] 해당 없음
		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	「건축법」 제61조	[] 적합 [] 부적합 [] 해당 없음

구 분		조사내용	관련규정	완공 후 현황
현장 조사	건축설비	승용승강기의 설치	「건축법」 제64조	[] 적합 [] 부적합 [] 해당 없음
		승용승강기의 구조	「건축법」 제64조	[] 적합 [] 부적합 [] 해당 없음
		비상용승강기의 설치	「건축법」 제64조	[] 적합 [] 부적합 [] 해당 없음
		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구조	「건축법」 제64조	[] 적합 [] 부적합 [] 해당 없음
		배연설비의 설치	「건축법」 제49조	[] 적합 [] 부적합 [] 해당 없음
		강제배수시설의 설치	「건축법」 제62조	[] 적합 [] 부적합 [] 해당 없음
		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	「건축법」 제62조	[] 적합 [] 부적합 [] 해당 없음
		열손실방지 조치	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제15조	[] 적합 [] 부적합 [] 해당 없음
		에너지 절약계획서 이행 여부	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제14조	[] 적합 [] 부적합 [] 해당 없음
	도시설계	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	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부터 제54조 까지	[] 적합 [] 부적합 [] 해당 없음
		공개 공지의 확보	「건축법」 제43조, 조례()% 이상	() % [] 해당 없음
	장애인 편의시설	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		[] 적합 [] 부적합 [] 해당 없음
	전유부 표시확인	집합건축물의 전유부 호별 표시가 공사완료도서와 일치 여부		[] 일치 [] 불일치 [] 해당 없음
안전관리 관련 주요 사항				
그 밖의 사항				
종합의견				

첨부서류	
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19조	1. 건축공사감리 점검표 2. 별지 제21호서식의 공사감리일지 3.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4.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5. 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자재의 사용 총괄표 6. 공사현장 사진 및 동영상(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만 해당합니다) 7. 공사감리자가 제출한 의견 및 자료(제출한 의견 및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

작성방법	
1. ‘감리구분’은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9조제2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의 경우 "상주감리"에 √ 표시를 하고, 그 외의 건축공사의 경우 "상주감리 이외"에 √ 표시를 하며, 허가권자 지정감리 또는 건축주 지정감리 여부를 구분하여 √ 표시를 합니다. 2. ‘지번’은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, 「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의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. 3.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고서 작성 당시의 공사현황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. 4. ‘관계전문기술자 협력’은 「건축법」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공사감리를 할 때 분야별로 협력받아야 할 사항을 적으며,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·날인해야 합니다.	